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2014121(본소), 2017나2014138(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2014121(본소), 2017나2014138(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53547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7. 11.

판결 선고 2017. 8.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가합535478(본소),
2016가합52377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534,4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확장)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0,541,9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951,7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확장)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8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가) 이 사건 합의 이전 지출한 이자 부분

살피건대, 을가 제7, 8,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1. 9. 2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I빌딩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9. 26. 접수 제46129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합계 51,643,357원인 사실, 2006. 8. 30.부터 2007. 10. 2.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서 합계 51,643,607원1) 이 '신한이자',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2006. 8. 30.	24,313,250
2006. 10. 2.	2,093,561
2006. 11. 15.	2,310,594
2006. 12. 15.	2,035,948
2007. 1. 8.	2,098,221
2007. 2. 5.	2,161,095
2007. 3. 7.	1,892,641
2007. 4. 3.	67,534
	1,958,493
	945,479
2007. 5. 3.	67,534
	1,013,013
2007. 6. 4.	1,148,082
2007. 6. 5.	945,479
2007. 7. 3.	2,026,027
2007. 8. 3.	2,093,561
2007. 9. 5.	2,095,425
2007. 10. 1.	1,485,753
	67,534
2007. 10. 2.	824,383

2006. 8. 30.	24,313,250
합계	51,643,607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1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발생한 이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급받아 온 차임으로 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피고, C, D의 공유재산인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이 사건 합의 당시 E이 '원고가 2003. 4.경부터 2005. 12.경까지 J빌딩과 I빌딩을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과 그 이후부터 피고가 J빌딩, I빌딩, L빌딩을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에 관한 정산을 논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속인이 주고받을 것이 비슷하니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원·피고, C, D, E이 모두 피고의 위 제안에 동의하면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진행 중이던 위 각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모두 취하되었다.

③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 제1조에서는 '다음 사건은 원고(또는 고소인)의 책임 하에 취하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며 민·형사상의 소송 사건을 궁극적으로 종결한다. 향후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합의서 제6조에서는 '상기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자신의 상속 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는바, 원·피고, C, D, E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08. 9. 5.자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피고가 2005. 7.부터 I빌딩 및 L빌딩을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지분을 포기하였으니 원고는 이 부분 대출금 이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11. 피고 및 D,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 10871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8. 4.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지분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피고가 지출한 위 이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 합의에 기하여 정산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피고, C, D, E이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합의의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합의 이후 지출한 원리금 및 경매취하비용 부분

(1) 살피건대, 망인이 2001. 9. 26.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I빌딩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8호증, 을가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2008. 6.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08. 11. 6. 신한은행의 위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비용으로 합계 4,670,120원(= 43,800원 + 4,561,320원 + 65,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2008. 11. 6.부터 2009. 5. 19.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 및 이자 합계 421,413,000원(= 2008. 11. 6.자 195,329,880원 + 2009. 4. 30.자 50,000,000원 + 2009. 4. 30.자 20,000,000원 + 2009. 5. 14.자 50,000,000원 + 2009. 5. 19. 106,083,120원)을 변제한 다음 2009. 5.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합의 당시 신한은행의 위 부동산임의경매를 피고가 주관하여 취하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한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인 원·피고 및 C, D, E에게 공동상속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상속된 신한은행에 대한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채무소멸을 위하여 출연한 금원에 대한 구상 의무를 진다.

(2) 한편, 피고는 피고가 채무소멸을 위하여 출연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 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그들 내부적으로는 약정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도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른 내부적 분담비율을 대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약정한 분담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해주어야 할 금원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E,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지분비율이 10.0806%임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채무소멸을 위하여 출연한 위 각 금원 합계 426,083,120원(= 4,670,120원 + 421,413,000원) 중 원고의 분담비율인 10.0806%에 해당하는 42,951,734원(= 426,083,120원 × 10.08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I빌딩의 시가에서 보증금과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분할가액으로 산정한 점을 들어 피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은 I빌딩이 매매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고, 원고나 다른 상속인들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빌딩에 대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소멸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그 변제금 상당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 당시 상속재산분할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I빌딩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것은 상속분 계산을 위한 순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다시, 피고가 신한은행에 지급한 위 대출금 및 이자 변제금의 출처는 피고 고유재산이 아니라 원·피고, E, C, D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이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2, 13, 14,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및 이자 변제금의 출처가 피고가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신한은행의 위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피고 스스로 부담할 비용이고, 그 자금의 출처 또한 피고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E,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주관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를 취하시키도록 약정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 당시 원고와 E, C, D은 피고의 위 임의경매 취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 상 위 경매신청취하와 관련하여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지는 피고가 우선 비용을 들여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경우 그 비용을 상속인들이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의 인정과 달리 피고가 부담한 경매신청취하비용의 출처가 피고 고유재산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행부터 제17쪽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상속재산 관리비용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 세무기장료 부분

피고가 2008. 9.부터 2015. 1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등 세금신고에 관하여 세무사 ○에게 세무기장료로 합계 11,7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유지·보수·리모델링, 도배, 바닥재 공사비용 부분

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설비공사업자인 AE에게 2009. 6. 18. 40만 원, 2009. 11. 3. 500만 원, 2009. 11. 14. 300만 원, 2010. 1. 18. 200만 원, 2010. 2. 9. 500만 원, 2010. 7. 22. 70만 원, 2010. 8. 9. 1,000만 원, 2010. 8. 24. 1,000만 원, 2010. 8. 30. 1,000만 원, 2010. 9. 14. 1,000만 원, 2010. 9. 17. 1,000만 원, 2010. 10. 7. 500만 원, 2010. 10. 8. 500만 원, 2010. 10. 22. 500만 원, 2011. 1. 24. 18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2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인테리어업자인 AF이 2010. 10. 20. 피고에게 I빌딩의 도배 및 바닥재(데코타일) 공사비로 758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및 피고가 2010. 10. 19. AF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7. 22.부터 I빌딩 3층에서 거주하여 온 점에 비추어 위 공사비용이 피고의 개인적인 주거 목적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들 및 을가 제12, 1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와 C 사이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4827)에서 I빌딩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리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이 I빌딩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임차인 보수비용

I빌딩의 임차인인 P 교회의 임차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피고가 그 담임목사 Q에게 87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I빌딩 등 상속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12,598,000원(=

세무기장료 11,720,000원 + 임차인 보수비용 878,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10.0806%에 해당하는 1,269,953원(= 12,598,000원 × 10.080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2행부터 제19쪽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판결금채권

가) 살피건대, 피고는 200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454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7,223,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11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4,078,31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07. 12. 25.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이 많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미루어 온 것일 뿐,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포기 내지 면제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 당시 E이 '원고가 2003. 4.경부터 2005. 12.경까지 J빌딩과 I빌딩을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과 그 이후부터 피고가 J빌딩, I빌딩, L빌딩을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에 관한 정산을 논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모든 상속인이 주고받을 것이 비슷하니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원·피고, C, D, E이 모두 피고의 위 제안에 동의하면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가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시 진행 중이던 위 각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모두 취하되었고, 피고, C, D도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다.

③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2005. 12.경까지 J빌딩과 I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인바, 위 각

판결금 채권이 이미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의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위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반소 제기일에 이르기까지 9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각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구하거나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E의 상속재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하고 E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 면제나 포기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정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원·피고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모두 취하되고 피고, C, D이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1998. 9.부터 2003. 4.까지 J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 지분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속재산에 기한 채권이 아니라 피고의 고유지분에 대한 채권이고, 이 사건 합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J빌딩 중 1/7지분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J빌딩의 나머지 지분 6/7을 원·피고, C, D, E이 각 6/35지분씩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피고, E, C, D은 2008. 9. 5.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E이 위 J빌딩의 상속재산 부분을 상속분으로 소유하고, 위 상속분을 제외한 E의 나머지 상속분은 J빌딩의 공동소유자인 원고, 피고, C, D 등 4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정하여 J빌딩 전체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E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하여

원·피고, C,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489호로 J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27. 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③ 이후 E은 위 임의조정조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J빌딩에 관한 원·피고, C, D의 각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등에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피고, E, C, D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갑 제1, 2,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원고가 2003. 4.부터 2005. 12.까지 J빌딩과 I빌딩을 관리하면서 받은 임대료' 관련 채권인데, 피고는 '원고가 1998. 9.부터 2003. 4.까지 J빌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얻은 임대수익 중 피고 지분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피고, E, C, D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모든 상속인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부열

판사김유진

판사박해빈

1) 피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신한은행에게 변제한 대출이자

합계 51,643,377원이라고 주장하였고, 2017. 3. 3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변제한 대출이자 합계가 49,545,136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을가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51,643,607원'의 오기로 보인다.